

한전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 시행 관련 검토 보고

2024. 06. 05.

1 개요

- 한전 협력회사 산재예방 능력 향상을 통한 관련 법령 이행 및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

※ 산안법(제61조) 및 중처법 시행령(제4조) - **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**

➔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마련 및 점검

※ 관련근거 :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7조(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)

2 주요내용

① (계약前 안전수준 평가) 공사수행을 위한 사전 적정성 심사

- (대상) 배전총액공사('24.6월중~), 지중송전위탁('24.11월 입찰~)
 - ※ '23년 송변전협력회사 공사 先시행
- (시기)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계약체결 前 평가
- (방법) 외부 전문기관 활용 평가 / 한전 본사·본부 안전부서 검증
- (활용) 평가결과 3개 등급[A~C]으로 분류(B등급 이상시 계약·공사시행)
 - ※ 부적격(C등급) 협력사는 보완요청(개선기회 2회 부여) 및 재심사

② (공사中 이행실적평가) 주기적 실적관리로 안전관리 실행력 제고

- (대상) '계약 前 안전수준 평가'를 시행한 공사
 - ※ 배전총액 및 송변전 협력사('24.7), 자발참여 배전 전문회사 시범평가(경기본부, 72개사, '24.7~8)
- (시기) 6개월 이상 장기공사는 사전 컨설팅 후 평가 시행(실효성 제고)
- (방법) 외부 전문기관 활용 평가 / 한전 본사·본부 안전부서 검증
- (활용) 평가결과 5개 등급*[S~D]으로 분류(B등급 이상시 공사 수행)
 - ※ 평가결과 부적격 시(C등급↓) 보완시까지 공사중지 또는 매월 안전지도서 발행 및 재평가(보완시 공사재개)

③ (공사後 보상) 우수협력회사 선정 및 지속확대 기반 마련

- (대상) 실적평가 결과 S등급 협력사(준공시 기준)
- (방법) S등급 중 상위 5% 선정*('24.12월 예정 / 년 1회 시행)
- (혜택) 차기 계약시 우대를 통한 '계약기회 확대' (~ '27년),
상장 및 감사패 수여 등 인센티브 지속발굴

3 향후 계획

- 평가시행 후 결과분석을 통해 지속개선 및 평가대상 확대시행 예정('25~)